「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(포괄)확인서 고시」 신구 조문 대비표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th>개 정 이 유</th></tr>
<tr>
<td>□ 목적

○ 농축수산물의 생산자 및 제조자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FTA 활용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</td>
<td>□ 목적

○ 농축수산물, 식품 및 재활용 물품의 ----------</td>
<td>○ 고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반영</td>
</tr>
<tr>
<td>□ 원산지(포괄)확인서로 인정하는 품목 및 서류

○ 인정품목([별표 1] ~ [별표 5] 참조)

<신 설>

○ 인정서류

<신 설></td>
<td>□ 원산지(포괄)확인서로 인정하는 품목 및 서류

○ ---------- ~ [별표 6] ----
⑥ [별표 6] 재활용 공산품: 25개 품목

○ 인정서류
<table><tr><td>재활용 공산품</td><td>⑲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서</td><td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(재활용제품의 규격·품질기준)</td><td>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</td><td>서식19</td></tr></table></td>
<td>○ ‘재활용 가루 세탁비누’ 등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품목 25개를 고시 적용 대상(별표 6)으로 지정

○ ‘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’를 고시 적용 대상 서류(서식 19)로 지정</td>
</tr>
</table>